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안 번호	528
----------	-----

제출년월일 : 2023년 2월 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악화로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존이 위협당하고 지속적인 양극화·빈부격차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약자의 계층이동을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약자와의 동행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자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약자동행 지수 개발 등으로 관련 사업 성과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약자에 공정한 기회제공 및 적극적 배려 등으로 약자동행 가치 확산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약자”와 “약자동행”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약자동행 정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다. 약자동행 수행의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약자동행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5조)
- 마. 약자동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바. 다양한 약자 발굴과 대상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사. 약자동행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약자동행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아. 약자동행 관련 사업 성과를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약자동행 지수’ 개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자. 약자동행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차. 약자동행 관련 사업계획 검토 및 컨설팅, 약자동행 지수 및 통계 관리 등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카.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타. 약자동행 정책 추진함에 있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다. 기타

(1) 입법예고 ('22.11.10. ~ 11.30.) 결과 요약서 : 별첨

(2) 비용추계서 : 별첨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자동행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적극적 배려를 제공하여 약자의 소득계층 이동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통합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자”란 경제적 빈곤이나 고유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경제·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 접근에 제약이 있어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2. “약자동행”이란 약자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주요 생활영역에서 차별없이 기본적인 서비스 또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약자동행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자치구, 국내·외 유관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 추진함에 있어 용어 사용 또는 행·재정적 지원과정에서 약자가 사회적인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 및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등이 약자동행 관련 사업 수행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시장은 약자동행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약자동행 관련 행·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약자동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약자동행을 위한 추진체계
3. 분야별(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등) 주요시책
4. 약자동행 지표·지수 운영
5. 약자동행 실태조사 및 대책
6. 약자동행 사업 성과의 종합적 분석·평가·환류
7.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행사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약자동행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약자를 발굴하고 약자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약자동행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자문하기 위해 약자동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약자동행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사업의 통합 관리·조정
2.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른 약자동행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3.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자문 및 권고
4. 그 밖에 약자동행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시의 복지, 여성, 교통, 교육, 건강, 주택, 재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약자동행 분야 관련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장은 당연직인 시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약자동행 지수 등) 시장은 분야별 약자동행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지수(이하 “약자동행 지수”라 한다)를 개발·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정책의 실효성 확보)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시 약자동행의 관점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약자동행 지수에 따라 약자동행 관련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전담기관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약자동행 관련 사업계획 검토 및 컨설팅
2. 약자동행 지수 및 통계 관리
3. 약자동행 관련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 지원
4. 제7조에 따른 약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수행
5.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및 위원회 심의·자문을 위한 분석 등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아래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2. 서울시책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약자동행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약자동행 정책을 추진함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제5조제2항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한국기독교 문화연구소	<조례안 내용 전체 반대>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자개념의 모호함(안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약자에 해당되는지 예상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법의 일반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 ▸ 서울시가 문습니다의 약자와의 동행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코너에서 약자의 범위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정의조항이 모호함이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자의 개념을 경제적 취약계층을 기본으로 하되, 신체적·정신적, 사회·경제·기술적 요인 등으로 공정한 기회접근이 제약되어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까지 개념을 확대한 것임. - 이에따라 교통약자, 주거약자 등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정의가 명확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의 개념은 이 조례에 정한 약자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정한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상 개념의 모호함은 약자의 범위 및 정책사업의 대상이 결국 안 제8조의 약자동행 위원회와 시장 직속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 ▸ 조례상 기준·개념의 모호함과 합하여 약자동행정책이 뚜렷한 법적 기준 없이 오로지 정책적·정치적 결정에 의해 추진됨을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상 약자의 범위 및 정책사업의 대상은 최소한의 일반적인 기준만 정한 사항으로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약자동행위원회 자문,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정치적 악용가능성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소수자 등 유입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2조제1항제2호의 신체적 변화는 임신출산 노화뿐만 아니라, 성전환으로 인한 성별변경도 포함될 수 있어 성소수자가 약자에 포함될 가능성 존재, 또한 이미 약자동행정책의 성소수자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존재(퀴어문화축제 관련) ▸ 성소수자뿐 아니라 외국인, 여성, 학생 등 편향적 인권정책의 대상으로 오히려 일반 국민을 역차별하던 계층이 약자에 포함되어 서울시 약자동행 정책도 편향적으로 흐를 위험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소수자 등 특정대상은 이 조례의 일반적 기준과 범위의 약자에 포함되지 않았음. 약자동행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대상 포함에 사회적 논란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검토할 예정임. - 또한 정책추진 시 특정대상 위주로 편향적이거나 일반인이 역차별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추진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생’용어 사용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2조제1항제3호에 ‘저출생’이란 용어는 현 사회의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급진페미니스트가 만든 이념편향적 용어이며, 학문적·정책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사용을 지양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이라는 용어에 인구감소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성차별적 요소가 있음.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용어이므로 이 조례에서는 출생인구 감소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용어인 ‘저출생’을 사용하는 것으로 고려하였음.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구분	교육 및 홍보(안 제12조) 약자와의 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	449,000	449,000	449,000	449,000	449,000	2,245,000
	기본계획(성과관리) 및 포상(안 제6조 및 제13조) 약자와의 동행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확산	146,000	146,000	146,000	146,000	146,000	730,000
	소계(b)	2,482,600	2,482,600	2,482,600	2,482,600	2,482,600	12,413,000
□ 총 비용(a-b)		△2,482,600	△2,482,600	△2,482,600	△2,482,600	△2,482,600	△12,413,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구분	국비	-	-	-	-	-	-	
	시비	지방세수입	2,482,600	2,482,600	2,482,600	2,482,600	2,482,600	12,413,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2,482,600	2,482,600	2,482,600	2,482,600	2,482,600	12,413,000	

5. 덧붙이는 의견 : 2022년 신설 부서의 사업으로 비용추계가 정확하지는 않음

6. 작성자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송경현(02-2133-9384)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제4조(비용의 지원), 제6조(기본계획 등), 제8조(약자동행위원회 구성 등),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3조(포상) 등에 따른 비용 발생

2. 세부추계 내역

가. 약자동행 지원 관련 총비용(5년) 12,413,000천원 = 2,502,600천원(연간비용) × 5년 =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1,007,000천원) + 서울 약자 동행 주간 운영(535,000천원) + 약자와의 동행 서울어울림광장 운영(280,000천원) + 약자와의 동행 시민아이디어 제안 및 서포터즈 운영(31,400천원) + 약자동행위원회 운영 등(34,200천원) + (약자와의 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449,000천원 + 약자와의 동행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확산(146,000천원) × 5년

- 나. 연간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1,007,000천원)** = 보조금심의회위원회 운영 등(2,000천원) + 성과보고회 운영(5,000천원) + 자치구 공모사업(1,000,000천원)
- 보조금심의회위원회 운영 등(2,000천원) = 보조금심의회 참석수당(1,800천원) + 보조금심의회 자료 제작(200천원)
 - ▶ 보조금심의회 참석수당 = 위원수 × 참석수당/인 × 회의개최 횟수 = 9명 × 200천원 × 1회 = 1,800천원
 - ▶ 보조금심의회 자료제작 = 200천원
 - 성과보고회 운영비 = 5,000천원×1회
 - 자치구 공모사업(1,000,000천원) = 100,000천원 × 10개사업
 - ※ 선정규모 : 10개사업, 사업별 1억원 내외 보조금 지급(지원사업의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 수 및 지원금액 조정)
- 다. 연간 서울 약자동행 주간 운영(535,000천원)** =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등(20,000천원) + 행사운영비(490,000천원) + 업무추진비(25,000천원)
-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등(20,000천원) = 제안서평가위원회, 기획회의 등(10,000천원) = 200천원×10명×5회) + 동행주간 관련 자료 제작 등(10,000천원)
 - 행사운영비(490,000천원) = 약자와의 동행 정책박람회 운영(250,000천원) + 심포지엄(70,000천원) + 어깨동무전시관(100,000천원) + 토크콘서트(70,000천원)
 - 업무추진비(25,000천원) = 동행주간 운영 업무추진 25,000천원
- 라. 연간 약자동행 서울어울림광장 운영(280,000천원)** = 행사운영비 280,000천원
- ※ 서울광장 일대에서 매월 1회 '약자와의 동행 주제(컨셉)'를 정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진행(토크콘서트, 어울림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등)
- 마. 연간 약자와의 동행 시민아이디어 제안 및 서포터즈 운영(31,400천원)** = 정책제안 환경 구축 및 참여 독려 등(9,400천원) + 서포터즈 활동 물품 구입 등(3,000천원) + 기타보상금(19,000천원)
- 시민 정책제안 환경 구축 및 참여 독려 등(9,400천원) = 웹포스터, 카드뉴스, 홍보물 등 제작 배포(3,000천원×1식) + 심사위원 수당 등(6,400천원=200천원×8명×4회)
 - 서포터즈 활동 물품 구입 등(3,000천원) = 온라인 홍보 이미지 제작 및 위촉장 등 활동 물품 구매(3,000천원×1식)
 - 기타보상금(19,000천원) = 시민 정책제안 포상 등(우수제안 포상 등(6,400천원=1,600천원×4회) + 참여독려 사은품 등(600천원=150천원×4회)) + 온라인 서포터즈 원고료, 활동비 등(12,000천원=1,200천원×10개월)

바. **연간 약자동행위원회 운영비(34,2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16,000천원) + 회의 운영비 등(13,200천원) + 시책업무추진비(5,000천원)

- 연간 약자동행위원회 참석수당(16,000천원) = 위촉직 위원수 × 참석수당/인 × 회의개최 횟수

▶ 본위원회 30명 × 200천원 × 2회 = 12,000천원

▶ 분과위원회 5명 × 200,000원 × 4회 = 4,000천원

※ 인당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시간 이상 1일 1회에 한하여 200,000원 지급

- 회의 운영비 등(13,200천원) = 본위원회 운영비 및 자료제작 등(8,000천원(4,000천원×2회)) + 분과회의 운영비 및 자료제작 등(5,200천원(1,300천원×4회))

- 약자동행위원회 운영 등 업무추진비 = 5,000천원

사. **연간 약자와의 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449,000천원)** = 약자동행 정책 홍보 추진(225,000천원) + 약자동행 교육 운영(6,000천원) + 약자동행 정책안내서 제작 및 배포(18,000천원) + 시민인지도 향상(200,000천원)

- 약자동행 정책 홍보 추진(225,000천원) = 동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인쇄(200,000천원) + BI개발 등 [20,000천원(기획·자료 조사 5,500천원, 디자인 개발·시안 제작 14,500천원)] + 업무추진비(5,000천원)

- 약자동행 교육 운영(6,000천원) = 강사료, 원고료 등(750천원) × 8회

- 약자동행 정책안내서 제작 및 배포(18,000천원) = 기획·디자인·집필·편집·출판 등 18,000천원

- 시민인지도 향상 = 200,000천원

아. **연간 약자와의 동행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확산(146,000천원)** = 기관별 성과관리 점검(58,000천원) + 자치구 및 관련 기관 협력 모델 발굴(44,000천원) + 업무추진비(10,000천원) + 포상금(34,000천원)

- 기관별 성과관리 점검(58,000천원) = 기관별 성과관리 점검회의(4,000천원=1,000천원×4회) + 사업별 재구조화 및 조정·검토(12,000천원=1,000천원×12회) + 우수사업 공유사례집 발간(20,000천원=20천원×1,000부) + 우수사례 발표회 심사수당(2,000천원=200천원×10명) + 약자와의 동행 우수사례 발표(20,000천원=20,000천원×1회)

- 자치구 및 관련기관 협력 모델 발굴(44,000천원) = 시-자치구 및 관련기관 정책 발굴(24,000천원=4,000천원×6회) + 인쇄비 등 협약 관련 운영비(20,000천원)

- 업무추진비(10,000천원) = 약자와의 동행사업 의제발굴 10,000천원

- 포상금(우수기관 포상 34,000천원) = 대상(5,000천원×1개) + 최우수상(3,000천원×3개) + 우수상(2,000천원×5개) + 장려상(1,000천원×10개)